

**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  
(김홍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	2023. . .
제 출 자	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

**1. 제안 이유**

2022. 01. 13. 전부개정 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정(안 제2조)
- 나. 임기 등 신설(안 제2조의2)
- 다. 위원회의 기능 신설(안 제2조의3)
- 라. 위원회 개최의 통지 개정(안 제3조)
- 마.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바. 위임 규정 신설(안 제8조의3)

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3. 05. 30. ~ 06. 05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규칙 제 호

##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조의2,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조의2(임기 등)** 위원의 임기·선임, 위원장의 선임·직무,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·제11조를 준용한다.

**제2조의3(기능)**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, 욕설, 비방행위,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.

② 위원회는 의장이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회의규칙” 이라 한다) 제70조·제82조·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**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 의원” 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 의원” 이라 한다)

제8조의2,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8조의2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**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8조의3(위임)**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구성)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	<p><u>제2조(구성)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2조의2(임기 등) 위원의 임기·선임, 위원장의 선임·직무,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·제11조를 준용한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2조의3(기능)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, 욕설, 비방행위,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의장이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"회의규칙"이라 한다) 제70조·제82조·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u></p>
<p><u>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 의원"이라 한다)</u></p>	<p><u>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 의원"이라 한다)</u></p>

2.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대상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
<신 설>
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 · 자격심사 대상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
제8조의2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.

<신 설>

제8조의3(위임)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